

#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규정

제 정 2018. 8. 1.

전부개정 2021. 12. 28.

**제1조(근거 및 명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37조의5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이하 'TUEC'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4장에 따라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 'TUE'라 한다)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TUEC를 설치하고 그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TUE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문체육 TUE 신청
2. 프로스포츠 TUE 신청
3. 기타 TUE에 관련된 사항

**제4조(독립성)** TUEC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TUEC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TUEC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상, 스포츠 및 운동의학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의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선수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TUEC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TUEC 위원장과 TUEC 부위원장은 경력에 따라 의사인 TUEC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TUE를 신청한 선수가 속한 경기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위원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심의를 위한 대체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결방식)** ① TUE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는 서면으로 한다.

② TUEC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전자메일, 위원회 TUE 온라인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심사 절차)** ① 선수(또는 선수지원요원)가 TUE 신청서와 적합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TUE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 건을 TUEC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TUEC에 회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TUEC위원 중 3명 이상을 심사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TUEC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판정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TUEC는 TUE 신청 후 전문체육은 21일, 프로스포츠는 근무일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 ① 전조에 따른 TUEC의 심사 결과는 승인, 불승인 또는 반려 중 하나로 하며,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최종 의견조율권을 가진다.

③ TUEC가 의결하면, 위원회는 TUEC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체육의 경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그 밖의 관련 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 신청)** ① 전문체육 선수가 TUEC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때에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제91조에 따라 항소하여야 한다.

② 프로스포츠 선수가 TUEC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심사와 결정에 관여한 위원은 재심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TUEC 위원 1인당 1건 심사에 대해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직무 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비용 등의 실비는 위원회 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무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TUEC 위원은 위원 선임 시 이해 상충 및 기밀유지 서약서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8.8.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